

## 22. 아이티(Haiti)

### ◎ 주요 변동사항

| 구 분           | 2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적용대상          |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|
| 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 | 12% (6% / 6%)                      | 12% (6% / 6%)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|
| 노령연금 수급요건     | 가입기간 20년, 55세<br>(부분연금 : 10년, 55세) | 가입기간 20년, 55세<br>(부분연금 : 10년, 55세) | -       |
| 노령연금 지급률      | 33.3%<br>(부분연금 : 20~25%)           | 33.3%<br>(부분연금 : 20~25%)           | -       |
| 일시금           | 총 납부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납부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자가산 없음 |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5년(노령보험)
- 현행법 : 1967년(사회보험), 1971년(사회부조), 1976년(연금), 1990년(사회부조)

#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### 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민간부문 근로자
  - 임의가입 가능
  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
- 사회부조 : 아이티에 거주하는 빈곤층

#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사회보험

- 소득의 6% (단, 임의가입의 경우 12%)
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일일최저임금이며 법정일일최저임금은 250 gourdes(가사근로자) ~ 550 gourdes (금융, 통신, 상업 등)
- 사회부조 : 없음

#### 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월 신고소득의 12%
- 사회부조 : 없음

#### 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 - 총 가입임금총액의 6%
  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일일최저임금이며 법정일일최저임금은 250 gourdes(가사근로자) ~ 550 gourdes (금융, 통신, 상업 등)
- 사회부조 : 없음

#### ○ 정부

- 사회보험 : 필요 시 보조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5

#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55세 도달자
  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55세 도달자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55세 도달자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무직이고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극빈곤층인 66세 도달자

#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완전근로불능 판정을 받은 자. 장애는 산재에 기인하지 않아야 함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근로가 불가능하고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극빈곤층인 18세~65세

##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
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 및 18세(학생인 경우 제한 없음) 미만 자녀
- 배우자연금은 재혼 또는 동거 시 중지됨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 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 및 18세(학생인 경우 제한없음) 미만 자녀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33.3% 지급
  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~19년인 경우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5% 지급; 납부기간이 10년~14년인 경우 20% 지급
  - 평균소득은 인플레이션 미반영
  - 연금액 조정 : 필요시 조정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 : 이자 없이 가입자의 총 납부 보험료(사용자 및 근로자 기여금) 반환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급여 지급

#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장애발생 이전 10년 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0% 지급
  - 평균소득은 인플레이션 미반영
  - 연금액 조정 : 필요시 조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급여 지급

##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 지급. 연금은 수급가능 유족들에게 균분 지급
  - 연금액 조정 : 필요시 조정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 : 이자 없이 가입자의 총 납부 보험료(사용자 및 근로자 기여금) 반환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#### ○ 사회노동부(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Labor; MAST)

-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부조제도 전반적 감독

- **사회보험청 노령보험국(National Office of Old-Age Insurance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e)**
  - <http://www.ona.ht>
  - 삼자위원회와 사무총장에 의해 관리됨
  -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 
- **사회부조기금·경제 및 사회부조기금(CAS, FAES)**
  - 사회부조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